G - 136 - 2021

잠수기어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지침

202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강준혁
- 제·개정 경과
 - 2021년 10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 - 스쿠버용 압축공기 기준(SPS-KCLG7009-5353), 2014
 - DIN EN 15333-1:2008 Respiratory equipment Open circuit umbilical supplied compressed gas diving apparatus Part 1: Demand apparatus
 - IMCA D018 The Initial and Periodic Examination,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Diving Plant and Equipment, Rev1, 2014
 - IMCA D023 DESIGN for Surface Orientated (Air) Diving Systems
 - 어업재해 실태조사를 통한 고위험 업종 안전지침 개발, 국립수산과학원, 2019
 - KS B 5305:2018 부르동관 압력계
 - KS B 6750-3(일반산업용 압력용기)
 - KS B 1426 강제 관 플랜지 통칙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(안전인증대상기계등)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
 -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
 - 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5장 압력용기
 -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 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1년 12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잠수기어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잠수기어업에서 사용하는 잠수설비의 최소요구사항 마련과 점검을 통하여 잠수기어업인의 작업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정착성 수산물을 채취하는 잠수기어업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잠수기어업"이라 함은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잠수작업자가 호스를 통해 선상에서 압축공기를 공급받으면서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포획·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.
 - (나) "공기압축기"라 함은 물속의 잠수작업자를 위한 호흡용 기체를 동력으로 압축 하는 기계를 말한다.
 - (다) "공기조"라 함은 호흡용 압축공기를 저장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.
 - (라) "공기호스"라 함은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기체를 전달하기 위한 호스를 말한다.
 - (마) "기체전환 매니폴드"라 함은 압축공기의 역류를 방지하고 복수의 압축공기 공급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.
 - (바) "비상기체통"이라 함은 비상시에 호흡할 수 있는 압축공기를 저장한 스쿠버용 압력용기를 말한다.

G - 000 - 2021

- (사) "잠수조정반"이라 함은 잠수작업자에게 공급할 호흡기체의 압력과 유량을 제어하고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.
- (아) "최소공급압력"이라 함은 잠수작업자에게 공급하는 호흡용 기체의 압력을 말한다.
- (2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, 유해·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,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및 관련 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잠수기어업선 잠수설비

4.1 인원의 구성

잠수기어업은 잠수기어선을 소유한 선주와 작업자(선장, 잠수작업자, 잠수작업을 보조하는 자, 이하 보조자)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각 자의 책임과 권한은 아래와 같다.

4.1.1 선주의 책임과 의무

- (1) 잠수기어업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다.
- (2) 잠수기어업에 필요한 잠수기어선, 공기잠수설비, 감압을 위한 산소 및 개인보호 장비를 제공한다.
- (3) 작업자가 볼 수 있도록 최소공급압력을 비치한다.
- (4) 고용노동부 고시 「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감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4.1.2 선장의 책임과 의무

(1) 선박운항과 관련한 제반사항, 작업감독 및 압축공기 공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.

G - 000 - 2021

- (2) 고용노동부 고시「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수심별 잠수시간과 감압 시간을 선박에 비치하고 잠수작업자의 감압을 지원한다.
- (3) 압축공기 공급설비를 가동하고 유지·보수할 책임이 있다.
- (4) 조업 중 공기조의 저장압력을 확인한다. 저장압력이 최소공급압력 이하가 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잠수작업자를 분당 9미터 이하의 속도로 부상시킨다.

4.1.3 잠수작업자의 책임과 의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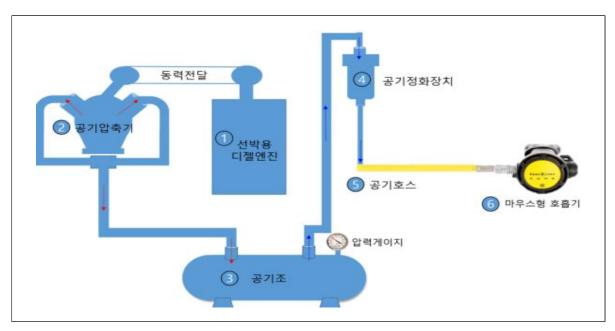
- (1) 잠수기어업 압축공기 공급설비 및 호흡기의 작동 상태, 공기조의 최소공급압력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선장에게 알린다.
- (2) 작업 중 선장 또는 보조자가 "작업중지" 신호를 보낼 때에는 이에 응답하고 즉시 분당 9미터 이하의 속도로 수면으로 상승한다.
- (3) 선장 또는 보조자가 "작업중지" 신호를 보내지 않더라도 작업 중 위험을 인지 한 경우 잠수작업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.
- (4) 선주 또는 선장이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5) 잠수 전 측심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감압수심과 작업시간을 이용하여 감압시간을 파악하고 선장과 보조자에게 알린다.

4.1.4 보조자의 책임과 의무

- (1) 잠수작업자의 장비착용, 잠수, 상승, 작업물 권양 등을 보조한다.
- (2) 잠수용 공기호스의 공급 길이를 조절한다.
- (3) 잠수작업자를 수면으로 상승시킬 때는 분당 9미터 이하로 상승시킨다.
- (4) 잠수작업자가 수중감압을 위해 상승을 멈출 때는 수심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(5) 위험을 인지한 때는 선장과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.

G - 000 - 2021 4.2 설비의 구성

잠수기어업선 잠수설비 구성은 <그림 1>과 같다.



<그림 1> 잠수기어업선 공기공급설비의 구성

4.2.1 공기압축기

(1) 공기압축기의 토출압력은 잠수작업자가 있는 수심의 압력보다 높고 호흡기가 작동할 수 있는 압력(최소공급압력) 이상이어야 한다. 최소공급압력은 <표 1>과 같다.

수심(m)	최소공급압력(kg/cm²)	수심(m)	최소공급압력(kg/cm²)
5	10.0	30	12.5
10	10.5	35	13.0
15	11.0	40	13.5
20	11.5	45	14.0
25	12.0	50	14.5

<표 1> 최소 공급 압력

(2) 공기압축기의 흡입구는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. 공기압축기가 기관실 안에 설치된 때는 흡입구를 기관실 밖에 설치하여 기관실내 공기를 압축하지 않도록 조치한다.

최소공급압력 = (수심(m) ÷ 10) + 9.5 kg/cm²

G - 000 - 2021

- (3) 응축수 분리기가 있으나 자동배출장치가 없을 때 선장 또는 보조자는 압축기를 가동한 후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응축수를 배출한다.
- (4) 공기압축기의 구동부에 사람 또는 신체의 일부가 접근할 수 있는 경우 방호울을 설치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한다. 다만, 구동부가 밀폐되어 있는 등 사람 또는 신체의 일부가 접근할 우려가 없는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.
- (5) 공기압축기는 사용 전·후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.

4.2.2 공기조 및 공기청정장치

- (1) 공기조의 내압성능은 최고사용압력의 1.5배 이상이어야 한다.
- (2) 공기조의 연결부는 관용나사를 적용한다. 플랜지를 사용할 때는 개스킷을 넣는 홈(groove)이 있는 플랜지를 사용하여 개스킷 손상으로 짧은 시간동안 다량의 공기누출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.
- (3) 공기조는 공기조 내압을 표시하는 압력게이지,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때 압력 용기 및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밸브, 공기조 내 수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부품은 내압성능을 만족해야 한다.
- (4) 공기청정장치를 통과한 공기의 질은 <표 2>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. <표 2> 압축 공기 기준

공기성분	노출기준
산소	20 ~ 22%
이산화탄소	1,000 ppm 이하
일산화탄소	10 ppm 이하*
오일미스트	5 mg/m³ 이하∗
냄새	없을 것

- *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소방청고시) 제35조(공기질분석)
- (5) 공기질 측정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공기압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수리한 후 즉시 실시한다.
- (6) 공기질 측정 및 분압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기술지침(G-129-2018) 「잠 수용 호흡기체의 질 및 분압 관리에 관한 지침」에 따른다.

G - 000 - 2021

4.2.3 공기호스 등

- (1) 호스는 1,000 뉴턴(N)의 정하중을 10 ~ 15초간 가했을 때, 파열, 누설, 부품,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.
- (2) 공기호스를 결합한 생명줄은 3.500 뉴턴(N) 정하중에 5분간 견뎌야 한다.
- (3) 공기호스의 내구연수를 초과한 때는 사용횟수와 관계없이 폐기한다.
- (4) 통신선의 저항은 30미터 당 1 오옴(Ω) 이하, 절연저항은 1 메가오옴($M\Omega$)을 초 과하여야 한다.
- (5) 공기호스 등의 점검은 <별지서식 1> 점검양식에 따른다.
- (6) 공기호스에 길이를 표시할 때는 <표 3>을 참고하여 절연 테이프 등을 호스에 감아서 표시한다. 잠수작업자 쪽 D링 또는 잠수작업자와 묶을 수 있게 호스에 부착된 기구의 위치를 길이 표시의 시작점으로 한다.

< 丑	3>	길이	표시	색상의	예시

길이(m)	색상	길이(m)	색상
5	백색 고리 1	40	황색 1/백색 3
10	백색 고리 2	45	황색 1/백색 4
15	백색 고리 3	50	황색 고리 2
20	백색 고리 4	55	황색 2/백색 1
25	황색 고리 1	75	황색 고리 3
30	황색 1/백색 1	80	황색 3 /백색 1
35	황색 1/백색 2	100	적색 고리 1

(7) <표 3>의 표시 간격에도 불구하고, 용도에 따라 표시간격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. 다만, 표시간격을 늘이는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.

4.2.4 응급처치용 장비

- (1) 잠수작업자의 감압을 위하여 호흡기와 연결된 고압산소를 비치한다.
- (2) 과열 및 연료 누유에 따른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한다.

KOSHA GUIDE G - 000 - 2021

4.3 비상용 개인보호장비

4.3.1 호흡보호구

(1) 공기공급이 불량할 때를 대비하여 선주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지급 하고 잠수작업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.



<그림 2> 비상기체통

(2) 비상기체통을 휴대할 때에는 선상에서 압축공기 공급이 중단된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의 역류를 방지하는 아래의 장치를 사용한다.



<그림 3> 공기공급원 전환 매니폴드

(3) 선주는 선장이 잠수작업자에게 공급되는 공기의 압력을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4.3.2 추가 보호설비

(1) 선주는 선장이 압력계가 설치된 위치에서 자주 벗어나야 할 때는 최소압력 이하일 때 압력감소를 알려주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.

(2) 선주는 잠수작업자의 적절한 감압을 위하여 잠수작업자의 작업수심을 관찰할 수 있는 수심게이지를 설치한다. 수심게이지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측심기 또는 수중시계의 측심값을 활용할 수 있다.

안전 수준	낮음	→	높음
	압력게이지	압력게이지 + 저압 경보기	압력게이지 + 저압 경보기 + 수심계측기
조치 방법 예시	10 § 15 20 = 25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		

<그림 4> 압축공기 공급설비의 안전장치

5. 비상절차

「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」에 따른 감압을 하지 못한 때는 아래와 같이 한다. ※ 주의: 의사의 진단 없이 임의로 감압병 치료를 시도하지 않는다.

- (1) 「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」에서 정한 감압시간 동안 감압하지 못하고 배 위에 오른 때는 해당 수심으로 다시 잠수하여 감압한다.
- (2) 위와 같이 할 수 없을 때나 관절통증, 감각이상 등과 같은 감압병 증상이 있을 때는 100% 산소로 호흡하면서 가까운 기압조절실로 이동한다. 감압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기술지침(H-54-2021) 「잠수작업자 보건관리 지침」을 참고한다.
- (3) 기압조절실에 도착하여 의사의 조언을 구한 뒤 안전보건기술지침(G-128-2020) 「잠수용 기압조절실을 이용한 감압병 응급조치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다.
- (4) 응급조치 후 안정화 되면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한다.
- (5) <별표 1>과 같은 고압산소치료가 가능한 지역 의료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장 가까운 두 곳 이상의 연락처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한다.

<별표 1>

전국 다인용 고압산소챔버 의료기관 현황

연번	지역	병원	소재지	연락처
1	서울	서울아산병원	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	02-3010-3343
2	경기	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	화성시 큰재봉길 7	031-8086-3200
3	경기	명지병원	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	031-810-7135
4	인천	인하대학교 병원	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	주) 032-890-2622 야) 032-890-2300
5	강원	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	원주시 일산로 20	주) 033-741-1133 야) 033-741-1641
6	강원	강릉아산병원	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	033-610-4601~2
7	충남	홍성의료원	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	041-630-6583
8	경남	통영고려병원	통영시 중앙로 310, 312	055-644-8275
9	경남	삼천포서울병원	사천시 남일로 33	주) 055-830-9064 야) 055-835-9900
10	경남	신세계로병원	통영시 정동2길 58	055-648-8275
11	대구	광개토화상병원	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66	053-565-1190
12	부산	정관 일신기독병원	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6로 31	051-780-0545
13	부산	파크병원	부산 사하구 까치고개로 79-1	051-294-8330
14	부산	서호병원	부산 수영구 광남로 117	051-902-7777
15	전북	원광대학교병원	익산시 무왕로 895	1577-3773
16	전남	순천 성가롤로병원	순천시 순광로 221	061-720-2108
17	제주	서귀포의료원	서귀포시 장수로 47	주) 064-730-3075 야) 064-730-3000~3
18	제주	제주의료원	제주시 산천단남길 10	주) 064-720-2275 야) 064-720-2222

KOSHA GUIDE G - 000 - 2021

<별지서식 1>

잠수기어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점검 서식

순번	항목	요구사항	필요성	점검 당시 상태	검사일
I	공기압축기				
1.1	보호	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.	A		
1.2	공기 흡입구	오염원(내연기관의 배기구 등)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.	A		
1.3	접근성	작업자가 압축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쉬워야 한다.	A		
1.4	적합성	호흡용으로 설계·제조되어야 한다.	A		
1.5	압력	압출압력은 최소공급압력 이상이어야 한다. ※ 최소공급압력 = (수심(m) ÷ 10) + 9.5kg/c㎡	A	압력: kg/cm² 최소공급압력: kg/cm²	
1.6	압출량	실제 압출량은 분당 6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.	A	압출량: L/min@ kg/cm²	
1.7	안전밸브	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	A		
1.8	기능검사	안전밸브는 최소공급압력 초과, 설계압력 이하에서 개방된다.	A	작동압력: kg/cm²	
2	공기조 및 필터		•		
2.1	적합성	잠수작업 호흡용으로 설계·제조되어야 한다.	A		
2.2	내압성	공기조의 상용압력은 최소공급압력을 초과하여야 한다.	A	상용압력: kg/cm² 저장압력: kg/cm² 최소공급압력: kg/cm²	
2.3	누기검사	공기조, 호스, 배관 연결부는 공기가 새지 않아야 한다.	A		
2.4	배수	밸브를 열어 배수하여 수분이 없음을 확인한다.	A		
2.5	필터	필터를 통과한 압축공기의 질은 압축공기 기준 이하여야 한다.	A	산소: (20~22%) 이산화탄소: (1,000 ppm) 일산화탄소: (10 ppm) 오일미스트: (5 mg/m²)	

KOSHA GUIDE G - 000 - 2021

순번	항목	요구사항	필요성	점검 당시 상태	검사일		
3	공기호스						
3.1	적합성	잠수작업 호흡용으로 설계·제조되어야 한다.	A				
3.2	내압성	공기호스의 상용압력은 최소공급압력을 초과해야 한다.	A	상용압력: kg/cm² 최소공급압력: kg/cm²			
3.3	누기검사	공기호스 및 호스 이음물은 공기가 새지 않아야 한다.	A				
4	통신장치 맟 수	중조명					
4.1	신호선	신호선의 저항은 매 30 미터 당 1 오음 (Ω) 이하이고, 절연저항은 1 메가오음 $(M\Omega)$ 을 초과하여야 한다	A	측정저항 :오음(Ω)신호선의 길이:미터(m)30m당 저항:오음(Ω)절연저항 :메가오음			
4.2	통화장치	송신자의 음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감도여야 한다.	A				
4.5	수중조명	수중조명의 배터리를 교환 또는 충전하였다.	A				
5	5 비상기체						
5.1	압력 및 내용적	비상기체의 압력은 180 bar(g)*이상이어야 하고, 내용적은 수면까지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.	A	충전압력: bar(g) 내 용 적: 리터			
5.2	기능검사	공기역류를 방지하는 체크밸브의 기능 검사	A				

A: 요구사항을 엄밀히 따라야 할 사항, B: 요구사항을 다른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항, C: 준수 시 편의사항 그러나 미준수 시에도 안전에 영향 없음. * (g)는 게이지로 측정한 압력을 뜻함. 18 Mpa 또는 약 183 kg/cm²에 해당하는 압력임